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일반적 보상근거 마련 등〉

■ 이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28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일반적 보상근거 마련’ 관련 총괄 검토의견	12
2. 진실규명 사건 관련자의 정의	27
3.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28
4. 보상금 및 보상 원칙	29
5. 보상금 지급신청 및 심의 절차	30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31
7. 보상금 등 환수	3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상회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8. 12.
3. 회 부 일 : 2024. 8.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조사를 통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미흡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등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자 및 그 유족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규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거와의 완전한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의2,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근거를 도입하면서, 이에 맞추어 법률명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장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u>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u>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u>화해</u>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u><신설></u>	<u>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u> 제1조(목적) ----- ----- ----- ----- ----- -----<u>화해와 그 아픔에 대한 보상을</u>----- ----- -----.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실규명결정 사건”이란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제2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을 말한다.

2.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제34조의2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
람을 말한다.

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
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다.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
를 입은 사람

라.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인권
침해사실이 확인된 사람

3. “유족”이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
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
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의 배
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
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
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
는 사람 중에서 제34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34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보상 등 조치

제34조(국가의 의무) -----
-----피해 보상 및-----

-----.

제34조의2(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 ①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련자의 확인 및 그 유족 해당 여부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2. 관련자 및 그 유족 보상금의 심의·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
3. 관련자 중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

<신 설>

<신 설>

<신 설>

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협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보상 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의4(보상금) ①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34조의5(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

<신 설>

<신 설>

<신 설>

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제26조의 진실규명결정을 제28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6(보상금의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34조의7(결정서정본 송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의8(재심의)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34조의6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34조의7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

<신 설>

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의6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34조의9(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제34조의7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10(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신 설>

제34조의11(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34조의12(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6에 따른 결정기한이 지나도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신 설>

<신 설>

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4조의1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14(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

<신 설>

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4조의15(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

<신 설>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자문기구의 구성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
가 아닌 자는 진실화해위원회 또

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의16(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또는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
라 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위원회등
위원회등
위원회등
위원회등
위원회등

제42조(자격사칭 금지) -----위
원회등-----
-----위원
회등-----

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
등이-----진실화해위원회, 보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u>위원회</u>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u>위원회</u>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u>위원회의</u>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u>위원회</u>의 권한을 행사한 자 3. (생략)	<u>상심의위원회</u> 또는----- -----.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u>위원회등</u>----- ----- -----. 제45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u>위원회등</u>----- -----<u>위원회</u> <u>등</u>----- ----- 2. ----- -----<u>위원회등</u>----- ----- 3. (현행과 같음)
--	---

1. ‘일반적 보상근거 마련’ 관련 총괄 검토의견

현행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함)를 두고, 진실화해위원회가 제2조제1항¹⁾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도록 하며,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면서²⁾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³⁾ 하고 있음.

즉, 현행법은 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업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 등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34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①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개정안은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함)라는 용어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면서, 국가가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보상 등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내용을 신설하면서, 법률명 및 제4장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보상 등 조치”로 개정하고 있음.

[현행법과 개정안의 법률명 및 장 구성]

구 분	현 행 법	개 정 안
법률명	진실·화해를 위한 <u>과거사정리 기본법</u>	진실·화해를 위한 <u>과거사정리 및 보상 기본법</u>
제1장	총칙	(현행과 동일)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현행과 동일)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현행과 동일)
제4장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u>조치</u>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u>보상 등 조치</u>
제5장	보칙	(현행과 동일)
제6장	벌칙	(현행과 동일)

개정안에서는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보상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① 제2조에 따른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기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② 소송에서 국가의 배·보상 책임을 인정받지 못했던 희생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보상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보상금의 산출 등에 관한 사항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자에 대한 일반적·포괄적인 보상 근거가 마련되므로, 안 제34조의2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관련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개별적인 소송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

관련자에 대한 일반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①신속한 피해구제 및 입법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점, ②사건 간의 형평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배·보상 절차를 간소화하여 권리 구제가 용이해지는 점, ④피해를 받았으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던 피해자의 구제가 가능한 점, ⑤소멸시효가 완성된 피해자를 함께 구제할 수 있는 점 등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 개별적인 보상 입법 없이도 피해구제가 가능해져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반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재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별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있어, 과거사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는 경우에도 보상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보상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일반적인 보상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는 경우 별도의 법률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실화해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피해구제에 기여함과 동시에 단일 법률로 다양한 사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규율할 수 있게 되어 입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과거사 사건별로 별도의 심의 기구를 두고 있는 현행 체계와 달리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단일 기구에서

다양한 과거사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건 간 형평성 및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각각 규정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건별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 액수에 대해 상이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다수 운영됨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성도 있음.

개정안과 같이 일반적 보상 근거를 마련한다면 과거사 사건 전반에 대한 일관성 있는 판단을 통해 보상금 지급 등과 관련한 사건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유사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다수의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셋째,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개별적인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배·보상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고 보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 등 일부 법률에는 보상금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외의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

서는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건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나 각 개별 과거사 관련 법률의 관련 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는 피해자들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여야 하고 확정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의 소송 수행능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유사한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보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송 수행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넷째, 과거사 사건에 의해 피해를 받았으나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들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 그 가해행위의 책임자가 적대세력이거나 외국군대인 경우 등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의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 “진실규명사건 관련자”는 군·경찰 등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당한 사람 이외에 인민군 등 적대세력 및 참전 외국군에 의하여 희생당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소송에

서 대한민국 정부에 직접적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던 경우에도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가해자가 대한민국의 공권력인지 또는 적대세력, 외국군인지 등에 따라 배상 대상인지 아니면 보상 대상인지를 구별할 필요 없이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다섯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헌법재판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⁴⁾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제1항, 제766조제2항⁵⁾의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 결정⁶⁾한 바 있음.

그러나 「민법」 제76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관적 기산점은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므로⁷⁾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실규명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⁸⁾이

4) 제2조제1항제3호(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

5)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6) 헌법재판소 2018.8.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7)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경과한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구제를 받지 못하였음.

개정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해자라 할지라도 개정안에 따라 지급신청을 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임.

다만, 개정안과 같은 일괄 보상입법 방식은 ①개별적인 보상 입법에 비해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 점, ②과거사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금전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점, ③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할지 하위 규정에 위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점, ④주관적 기산점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까지 구제하게 되는 경우 법적 안정성 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과 같이 일반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보상에 비해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임.

8)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구제에서 제외되었던 적대세력·외국군에 의한 사건 등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진실규명이 완료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들을 포함한 종전의 진실규명사건 피해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보상 대상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데,

보상 대상의 확대는 개별적인 법률의 제정·개정을 통해 배상·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현행 체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재정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기간(2020.12.10.~2022.12.9) 동안 접수된 사건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비해 약 2배 가량인 20,679건으로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음.

[1기·2기 진실화해위원회 비교]

구 분	1기	2기
조사기간	• 최초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4년 (2년 이내 연장)	• 최초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3년 (1년 이내 연장)
신청기간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접수건수	• 접수 11,175건 - (진실규명) 8,450건 - (규명불능·각하 등) 2,725건	• 접수 20,679건 - (진실규명) 7,298건 - (규명불능·각하 등) 5,966건

주: 2024년 9월말 현재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명, '24. 9. 25. 기준)

구분	신청 건수	배정* 건수	검토 중	상정 중	조사 개시	직권 조사	사전 조사	진실 규명	규명 (확인)	불능	각하	기타**
계	20,246	20,679	19	15	6,622	7	9	7,298	745	86	3,942	1,938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129	131	-	1	30	1	-	20	-	6	61	12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9,957	10,028	1	1	4,526	1	-	2,986	394	16	682	1,421
인권침해·조 작의혹·확정 판결사건	2,889	3,255	16	13	1,123	3	9	1,509	4	23	418	137
적대세력 관련 사건	3,885	4,060	2	-	686	2	-	2,355	347	41	297	332
역사적 중요한 사건	202	216	-	-	179	-	-	26	-	-	8	3
3·15의거 사건	492	493	-	-	73	-	-	402	-	-	1	17
기타	2,692	2,496	-	-	5						2,475	16

* 배정건수: 조사국에 배정된 사건으로 조사과정 중 사건 분리·병합 등으로 신청 건수와 차이가 있음

** 기타: 취하 및 여순사건 이관 사건 등

자료: 진실화해위원회

둘째, 다양한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금전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거쳐 그 용어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배상”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관련된 사항을 의미하고 “보상”은 적법한 업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 관련된 사항을 의미하는데, 과거사 사건의 경우 사건별로 가해

자 및 피해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바, 적법한 경우와 불법적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임.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 과정에서도 배상과 보상은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보상”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⁹⁾ 당시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고 차년도부터 지급이 필요한 점, 유가족협회의 의사 청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여 “보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이라는 용어가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다양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용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셋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의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지, 대통령령 등 하위 규정으로 위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다양한 사건들을 포괄하는 보상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과거사 사건에 대하

9) 제391회 국회 제3차 행정안전소위(2021.11.22.)

여 사건별로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지급 기준이 위임되는 경우 그 보상 기준과 보상금액 산출 방법 등에 대해 입법 당시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보상금의 적정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재정 부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관해서는 과거사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¹⁰⁾에 따른 보상금 기준은 한국법제연구원(주관, 배·보상기준 마련)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협조, 유족의견 수렴 등)이 경제인문사

1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효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3.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 가.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 또는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 ② 후유장애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회연구회와 협동연구과제로 수행한 연구용역(“과거사 배·보상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결과를 입법화한 것임.

이외에, 개정안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①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시 추가적인 피해구제는 어려울 수 있는 점, ②현재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거사 사건 중 보상 규정이 없는 사건의 경우는 별도의 보상 입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 기한을 “진실규명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있어 진실규명결정이 보상금 신청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신청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 또는 진실규명이 완료되기 전에 조사기간이 종료된 사람의 경우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피해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진실규명결정을 받지 못하여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다른 개별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수·순천 10·19사

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희생자 심사와 명예회복만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대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므로, 해당 법률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입법이 필요할 수 있음.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정안은 i)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고 입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 ii)배·보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점, iii)국가배상책임 유무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히 폭넓은 피해구제가 가능한 점 등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으나,

i)국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ii)피해구제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iii)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할지 하위법령에 위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봄.

제21대 국회에서는 김용판의원안(의안번호 제2114446호) 및 서영교의원안(제2116940호) 등을 병합심사하여 소위원회 심사(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거쳤으나,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였음.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를 구제할 수 있고, 일반적 배·보상을 관할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한시적 조직인 진실화해위원회에 들지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결론에 이르지 못하였고 개정안 입법 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시민사회, 유족회 등이 진실규명결정 후 국가차원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으며, 현행과 같이 개별적인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방식은 구제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모되며, 그 결과도 재판부에 따라 상이하여 형평성이 떨어지고, 적대세력 및 외국군에 의한 피해는 국가배상 대상이 아닌 점,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일반적인 보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사건별로 구체적 상황이 다른 바, 일반규정 신설 후 위원회 결정에 따른 모든 사건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보상이 남용되고 대외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현행과 같이 사건별로 보상의 타당성·시급성 등을 검토한 후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별도 입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거사 전반에 대한 보상의무 규정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하에서는 위에서 서술한 내용 이외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을 서술함.

2.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의 정의

개정안은 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설정하면서 관련자를 “①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②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③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포함)를 입은 사람 ④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안 제2조의2제2호).

총괄 검토의견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개정안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공권력 외의 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역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폭넓은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3.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금의 심의·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겸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안 제34조의2).

보상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경우 심의·의결 과정에서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각 중앙부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을 지녔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심의 준비 및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의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 위원 임명이나 위촉 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 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보상금 및 보상 원칙

개정안은 국가가 관련자와 유족에 대해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안 제34조의4제1항),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보상금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34조의10·제34조의11).

보상금은 관련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¹¹⁾에서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및 조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¹²⁾에서는 해당 두

1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7조의5(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 25. (생략)

②(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법률 및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세 면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들을 아울러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5. 보상금 지급신청 및 심의 절차

개정안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진실규명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5부터 제34조의8까지).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실규명결정 송달일부터 2년” 및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종전에 결정을 받은 사람)”의 기간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6개월)¹³⁾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6개월)¹⁴⁾에

수 없다.

② (생략)

13)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

비해서는 다소 길게 규정되어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신청의 편리성과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또는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지급될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안 제34조의13).

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8273호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等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27일을 말한다) 이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먼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은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바, 동일한 사실관계와 피해를 바탕으로 이미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다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또한,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기판력을 발생시킨다는 점¹⁵⁾에서 보상금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키고 보상금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개정안의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 타 입법례를 참조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대법원 1995.05.12 선고 94다62048 판결 참조

7. 보상금 등 환수

개정안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오지급된 경우, 행방불명자가 살아있거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확인된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환수 시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안 제34조의14).

보상금의 환수와 관련하여서는 환수 여부를 국가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¹⁶⁾와 재량으로 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규정한 입법례¹⁷⁾가 모두 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 규정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현행법 및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1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 있거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1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도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⁸⁾

문 의 처
02)6788-5343

1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거나 보상금등을 받게 한 사람

④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